

第41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0月19日(水) 10時00分

場 所 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事務監事및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事務監事및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玄壽漢議員 外 4人 發議) ...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朴勸先議員 外 4人 發議) 3面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성원이 되게 해준데 대해서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발전적인 성원과 열의가 그리고 진지한 토의에 임해야 하겠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제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林星圭 議案係長 林星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4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朴勸先議員 外 4인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玄壽漢議員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건 모두 '94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憲中 의안제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事務監事및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玄壽漢議員 外 4人 發議)

(10時03分)

○委員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玄壽漢議員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議員 玄壽漢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委員長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일년중 가장 좋은 달이라 하여 상달이라 불리는 10월에 제41회 임시회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즉 현행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10조의 내용중 “영 제17조의 6”과 “영 제17조의 7”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 “영 제17조의 7” 및 “영 제17조의 8”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은 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강도있고 내실있는 감사·조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 함이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10. 11

제 출 자 : 현수환의원의 4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4317호, '94.7.6)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할 때에 본회의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감사)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한다.

제10조중 “영 제17조의 6”을 “영 제17조의 7”로, “영 제17조의 7”을 “영 제17조의 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수있다.(개정 94.7.6)

○委員長 金憲中 玄壽漢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玄壽漢議員님 외 4인의 議員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가 '94년 7월 6일 개정됨으로써 조례를 상위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와 조사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입니다. 상위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내

용입니다.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수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내용 즉, 지금까지 감사나 조사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개정 취지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의회를 대상으로 한 개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憲中 蔣昭秀 專門委員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李憲九委員長!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長입니다.

본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정신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憲中 李憲九委員長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토론이었고 이에 재청까지 나왔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1分)

○委員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朴勸先議員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朴勸先議員 朴勸先議員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늦게 참석하신 것을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委員長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제41회 임시회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감사위원의 수를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이하로 규정하고, 제2항에 지방의회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중 제2조 감사위원의 정수 중 “3인”을 “3인 이상 5인이하”로 하고, 단서 “다만, 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은 결산감사의 질을 높혀 내실있는 감사가 되고자 함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조례도 맞게 개정하려 함이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2.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朴勸先議員 外 4人 發議)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1994년 10월 11일

발 의 자: 박권선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

나. “의원은 감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의 단서 신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3인으로”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金憲中 朴勸先議員님! 제안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4년 10월 11일 朴勸先議員님 외 4인의
議員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
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하위 조례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또한 감사위원 구성에서

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94년 7월
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법 제125조의 규정
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
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
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
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
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감사위원
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법 개정이 되었습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수는 늘리되 이에 참여하는 의원 수는 1
명으로 오히려 축소되는 개정 내용으로 그
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를 공
인회계사등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켜 결산검
사의 전문성을 확대하자는 개정 취지로 이
해가 됩시다라는 결산행정에 대한 의정권
축소라는 결론도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러나 조례는 모법 규정 범위내에서 개정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조례는 모법의 개
정 내용과 일치한 개정 내용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憲中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朴禹信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朴禹信委員 朴禹信委員입니다.

지난번 7월 6일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 3인으로 한 조례는 그때
제정할 당시에 5년 이상 회계업무에 중

사한 유능한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이 모두 참석을 해서 우리가 배우는 입장으로 결산검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 제정했는데 모범 운운해가면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과거에는 어떻게 적법했고 현재는 46조에 의한 법을 개정해 과거 대비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 이것이 불법이 되는지 그것 좀 명쾌한 답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참고사항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의 1로 하게 되니까 방금 朴委員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議員님들의 결산행정 참여권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번 개정이 기초의회 의장단 건의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 과정에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단에서 다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의원들이 3분의 2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될 때까지는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부결은...

○**朴禹信委員**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제가 할 때에도 의원은 여기에 꼭 결산검사에 참여라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그러나 이것을 종로구 조례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이 다 참석을 하자 해서 그것을 묵살을 하고 저희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수정동의안으로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로 해서 통과했으면 어쩐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憲中** 예, 李憲九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장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단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專門委員 蔣昭秀** 그렇게 의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李憲九委員**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우리 朴禹信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도 넣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또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산검사는 어디까지나 수칙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서 관계관을 불러다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따져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불편하니까 우리 의원 수를 하나로 줄여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하면 오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專門委員 蔣昭秀** 그런 것도 아마 입법 과정에서 왜곡돼서 그렇게 개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당초 감사위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의장단에서 건의를 해서 3인 이상 5인까지 늘리는 것은 의장단 건의사항입니다. 5인으로 늘리고 난 뒤에 단서 조항 넣는 것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의사도 충분히 고려리라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憲九委員** 3인 이상 5인까지 늘리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의원을 3분의 1로 3분의 1을 따져보니까 1.67정도 되더군요. 사사오입 할 수도 없고 한사람입니다. 한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專門委員 蔣昭秀**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 것보다는 당초의 건의가 늘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당초 개정 취지를 왜곡시킨 게 아닌가 의장단에서...

○**李憲九委員** 결산검사의 질을 높여서 내실 있는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산검사서를 가져와 보면 숫자 영점 콤마까지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인

회계사가 와 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하자가 없는데 뭐 우리 의원들이 했다고 해서 내실있는 검사가 안되고 공인회계사들이 와 가지고 하면 내실있는 검사가 돼서 이번 법 개정에서 3인 이상 5인으로 늘려가면서 의원 수를 줄이는 그 의도는 말이죠 다분히 딴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憲中 예, 朴禹信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禹信委員 방금 李憲九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결산검사위원회 하기 전에 사실상은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수चना 이런 것은 유리알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회계사나 회계박사를 갖다봐도 이것은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구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감사 비슷한 그러한 관계로 해서 그동안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질타해 가면서 해왔던 결산검사를 한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질의하는 것은 저희가 상위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3분의 2로 하여 수정동의안으로 하면 어떻가 하는 생각을 해서 자꾸 전문위원님께 검토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憲中 그러면 보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4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在籍委員 9명 중 재석위원 7명으로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 시간에 정회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朴禹信委員 말씀하십시오.

○朴禹信委員 朴禹信委員입니다. 朴勸先 同僚議員님께서 발의한 것인데 물론 이것이 우리 조례의 상위법에 의한 개정으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맨날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거수하는 이러한 의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다만 제가 의원 발의를 하신 朴議員님께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것은 조금 이것을 유보를 했다가 그대로 무엇인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건의와 더불어 이러한 반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운영위원장 아니면 종로구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전체 의원들이 건의서를 다시 제출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 몇조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맨날 그렇게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만 말씀드리는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직분이 구민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다만 7일간의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또 그동안 3년 여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할 적에 많은 질타를 해서 구민대신 그래도 뭔가 잘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해왔는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냥 옳소 해서 저희가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굳이 악법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있겠지만 저희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이런 것은 한번이라도 저항을 해서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반대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憲中 朴禹信委員님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이죠? 재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재청이 없으면 재청이 없는 것으로 하고 玄壽漢 幹事님께서 말씀이 제실 것 같습니다. 玄壽漢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朴勸先議員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게 법을 개정할 때 우리가 먼저 결산검사 위원도 우리 종로구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맡았습니까라는 원래는 먼저 조례안이 전문인을 채용을 해서 할수 있다면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의원들의 실력이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3인이 전부 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군·구의원들이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의원 1명, 전문인으로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 건을 부결한다면 우리 먼저 조례가 그대로 존치하느냐 하면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장단회의에서 이것이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법이 다시 고쳐지면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혹시 고쳐질 가망성이 있기에 이법을 우리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내년 모법이, 법이 바뀌어지면 다시 그때 조례를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우리 朴勸先議員이 발의하신 이 내용을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憲中 예, 李憲九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玄壽漢委員님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朴禹信委員님이 제안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손을 번쩍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같습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 46조가 7월 6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개정(안)이 우리 의회에 부의될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 자신이 이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대

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거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개정(안)에 의원 1명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익년도 예산안을 착실히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삼기 위해서 결산검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의장단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결산검사 전년도에 예산안을 결산하고 검사하는 그 과정인데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의원의 의정권에 대한 축소를 자초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조금 아까 玄壽漢委員님께서 내년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단에서 나왔던 결산 얘기를 꼭 우리가 여기에다 개입시키고 대입시켜 가지고 내년에 이 법에 대한 개정이 다시 있을 거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서 통과시키자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어디까지나 이것이 오늘 보류가 되면 오늘 이후에 조례안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내년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오늘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玄壽漢委員님의 안에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憲中 감사합니다. 玄壽漢委員님에 대한 李憲九委員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玄壽漢委員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朴禹信委員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14時30分 舉手表決)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표결수 6명 중 찬성이 5명이고 반대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

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時31分 散會)

○出席委員 8名

金 憲 中	玄 壽 漢	李 憲 九
沈 載 得	羅 在 岩	朴 勸 先
朴 禹 信	朴 鍾 植	

○出席專門委員

蔣 昭 秀	尹 柱 彩
-------	-------